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512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512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3나452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905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별지1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별지2 피고명단 기재와 같다.

판결 선고 2018. 11. 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3나452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정산금 분배와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정산금이 분배된 2002.

2. 4. 무렵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2.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2차 정산금 분배 당시 제출받은 영수증과 각서만으로는 관리단집회를 대신하는 서면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AW 토지 지상 건물과 AX 토지 지상 건물은 별개의 건물이므로 각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도 각 토지 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전체의 여유공간 83평을 그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그 전체의 면적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정산 당시 그에 따른 수익금 분배에 있어서도 이를 구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1층 공간 점포 분양금, 공사비 정산금, 주차비 수입손실 총당금 회수금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관련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차 개발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지하 제1층 공용부분의 면적 합계 1,217.28㎡를 분모로 하고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자로 하여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금원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금원산정 방법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AZ 주식회사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정산금 분배와 관련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정산금의 분배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정산금 중 이 사건 공유지분 점포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정산금과 실제로 받은 정산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9.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Q, M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0.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별지